#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정희용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058 발의연월일: 2024. 11. 29.

발 의 자:정희용·김소희·박성민

김성원 · 안상훈 · 김형동

정동만 • 박덕흠 • 김태호

김예지 • 백종헌 • 서천호

정점식 의원(13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시·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현장에서 화재진압, 구조·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 여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고, 그 대원의 구성은 그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사람으로 하고 있음.

그런데, 현행법에는 의용소방대원이 임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 등을 입었을 때 본인에 대한 재해보상의 규정은 있으나, 의용소방대원 이 화재진압 보조 등의 임무수행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타인을 사상(死 傷)에 이르게 한 경우에 대한 형사상 면책조항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.

본 개정안은 제21대 국회에서 의용소방대원의 적극적인 소방활동 지원을 독려하고 형사책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의되었으나 구체 적인 논의 없이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. 이에 의용소방대원이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, 구조·구급업무의 보조 임무 수행 중에 고의나 중과실 없이 발생한 사상의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극적인소방활동 지원을 독려하려는 것임(안 제17조의2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장에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7조의2(임무 수행에 대한 면책)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임무 수행으로 인하여 타인을 사상(死傷)에 이르게 한경우 그 임무 수행이 불가피하고 의용소방대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임무 수행에 대한 면책에 관한 적용례)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의용소방대원이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제17조의2(임무 수행에 대한 면
	책)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제1
	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임무 수
	행으로 인하여 타인을 사상(死
	傷)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임무
	수행이 불가피하고 의용소방대
	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
	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
	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
	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.